



제1조(목 적)

축산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돈으로 선발된 종돈과 종돈장의 위생관리 실시요령을 규정함으로서 건강하고 능력이 우수한 종돈을 생산하여 양돈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축사의 환경위생관리)

- 1) 종돈을 사육하는 축사는 항상 15°C내지 25°C가 유지되어야 하며, 습도는 60~70%, 산소 15% 이상, 탄산가스 0.2% 이하, 암모니아가스 0.02% 이하의 조건이 유지되어야 한다.
- 2) 종돈사는 환기조정장치를 설치하여 항상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흡혈 곤충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방충망을 설치 및 살충제 살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종돈장 소독 및 관리)

- 1) 종돈장은 적절한 소독약제와 기구로서 주1회이상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2) 종돈장을 출입하는 모든 인력, 차량 및 기구 등은 출입시마다 축사와 떨어진 일정한 장소에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3) 모든 축사의 출입구에는 반드시 소독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백신접종)

- 1) 종돈에 접종하는 모든 백신은 공개업 수의 사로 하여금 시술토록 하여야 하며, 백신접종내역을 종돈 개체별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2) 돼지콜레라 백신은 생후 30~40일, 50~60일에 각각 접종하여야 하며 그후 매년 1회접종하여야 한다.
- 3) 전염성위장염 백신은 매 분만 5~7주전과 2~3주전에 각각 접종하여야 한다.
- 4)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백신은 미경산돈에 한하여 종부 4주전과 2주전에 각각 접종 하여야 한다.
- 5) 일본뇌염 백신은 미경산돈과 후보종돈의 경우 매년 5, 6월에 2~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여야 하며, 경산돈과 종모돈의 경우는 매년 5, 6월에 1회 접종하여야 한다.
- 6) 돼지단독백신은 생후 40~50일에 1차 접종하고, 1차접종후 3~4개월에 2차 접종하여야 하며 그후 매년 1회 접종하여야 한다.
- 7) 대장균백신과 위축성비염, 흉막폐렴, 파스

튜렐라페염의 3종 혼합백신은 매 분만 4주전과 2주전에 각각 접종하여야 한다.

제5조(내외부 기생충 구충 및 구서)

1) 내부 기생충 중 회충은 생후 2개월에 1회, 폐충과 편충은 생후 4개월에 1회, 그후 매년 1회씩 적절한 약재로 구충을 실시하고 구충제 사용 내역을 기록 보존 하여야 한다.

2) 외부 기생충은 외부소견으로 문제가 될 때마다 축체와 축사에 구충을 실시하고 축사환경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축사 내외에 쥐의 서식 및 출입이 없어야 하며, 종돈장 경영자는 구서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구충제나 구서제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공개업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종돈입식)

1) 외부로 부터 기준 종돈장에 종돈을 입식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입식전 60일동안 격리 사육하면서 다음 질병에 대한 실험실 검사, 임상관찰 백신접종 및 치료 등을 받은 후에 입식할 수 있다.

2) 실험실 검사대상질병과 방법

- 부루셀라병 : 시험관내 응집반응에서 음성
- 결핵 : 튜버큐린 피내반응에서 음성
- 가성광견병 : 혈청중화반응에서 음성
- 흡행성폐염 : 간접혈구응집반응에서 음성

3) 검사기관 : 상기 대상질병에 대한 검사는 공인된 전문 관계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험결과를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4) 임상관찰 대상질병은 돼지콜레라, 전염성위장염, 돼지단독, 위축성비염, 위행성폐염, 돼지적리, 살모넬라균증 등으로서 공개업수의사로 하여금 임상관찰을 받아야 하며, 관찰한 수의사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5) 백신접종대상질병은 돼지콜레라, 파보바이

러스 감염증, 일본뇌염, 돼지단독 등으로서 백신 접종은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6) 치료대상질병은 렙토스파이라균증과 톡소프라즈마병 등으로서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공개업수의사로 하여금 치료토록 하여야 한다.

7) 제2, 3, 4, 5항의 규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종돈 업자가 부담한다.

제7조(종돈의 정기검사)

1) 종돈 및 후보종돈은 부루셀라병, 렙토스파이라균증, 가지광견병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전문관계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결과를 개체별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경비는 종돈업자가 부담한다.

제8조(종돈의 전염병 관리)

1)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2조 2항의 규정에 있는 법정전염병이 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있을 때에는 동법 제5조, 6조, 8조 및 37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법정전염병이 발생된 종돈장은 당해 질병에 대하여 전문 관계기관에서 실험실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명된 사실증명서가 있어야만 이동 및 판매를 재개할 수 있다.

3) 제2항에 규정된 전염병의 검사에 필요한 경비는 종돈업자가 부담한다.

제9조(벌칙 적용)

1) 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종돈업자가 제4조 제1항과 제6조 제2, 3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1개월 기간내에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소정기한내에 이행치 아니한 때에는 종돈업 등록을 취소 한다.

2) 도지사는 종돈업자가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0조, 4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 한다.